

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: 김기대 의원 외 33명

나. 의안번호: 제2782호

다. 발의일자: 2021. 10. 14.

라. 회부일자: 2021. 10. 20.

2. 제 안 사 유

-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여 제시하고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바로 잡으며,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띄어쓰기 및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의 조례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함(안 제2조).

나.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정정함(안 제12조제2호).

다.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함.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자원순환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

5. 검토 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 「자원순환 기본법」에 따라 정의하고, 자원순환촉진위원회가 심의·자문하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 조항을 바로 잡으며, 띄어쓰기와 맞춤법 등 어문 규정 미준수 사항을 「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 없음.